2025/26

공인중개사 도시정비법 핵심

감정평가사, 주택관리사

엠북 자격증



- ↑ 스마트폰 수험총서
- ↑ 기출문제 지문 중심
- ★ 22분 완성, 암기코드 제공
- ↑ 스마트폰 화면에 최적화

도서명 : 도시정비법 핵심 ISBN : 979-11-7393-065-2

이메일: by4782@gmail.com

형식 : 스마트폰용 전자책(PDF) 저자 : 엠북

발간일 : 2025-08-20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: https://www.mbook.kr/

정가 : 4,000원

도시정비법 핵심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[목차]

제1장 총칙(p4)

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

지정(p7)

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(p15)

제4장 비용의 부담 등(p42~45)

[약어]

<u>장관</u>은 국토교통부<u>장관</u>

시도지사는 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

도지사, 특별자치도지사

<u>시군구</u>는

-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<u>시</u>, <u>군</u>, 자치<u>구</u> 또는 -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,

자치구 구청장 지자체장은 시도지사, 시군구

시행자는 사업시행자

처분계획은 관리처분계획

처분인가는 관리처분계획인가 <u>설립인가</u>는 조합<u>설립인가</u>

<u>공동시설</u>은 <u>공동</u>이용시설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www.mbook.kr)

제1장 총칙 (정의)

가. 주거환경개선사업

- 1) 주거환경 개선 - 도시저소득 주민 집단거주
- 기반시설 극히 열악
- 노후건물 과도 밀집
- 2) 단독/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기반시설과
- 공동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 보전, 정비, 개량

나. 정비기반시설(이하 기반시설)

- 1) 주요 기반시설과 공동시설
- 시군구 아닌 시행자가 건설시 시군구가

비용 전부/일부 부담

- <mark>도</mark>로, <mark>상</mark>하수도, <mark>공원</mark>, <u>공용주<mark>차</mark>장</u>, 공동<mark>구</mark> (<mark>도상/원차구</mark>)
- <mark>녹</mark>지, <mark>하</mark>천, <mark>공</mark>공공지, 광<mark>장</mark> (<mark>녹하공장</mark>)
- 2) 기타 기반시설

- 구거

- 열/가스 공급 시설
- 소방용수시설, 비상대피시설
- 시군구 관리 주거환경개선 구역 공동시설

다. 공동시설

- 주민공동사용 <mark>놀이터</mark>, 마을회관, 공동작업장
- 공동 구판장/세탁장/화장실, 수도

- 탁아소/어린이집/경로당
- 조례상 유사 시설
- 단, 유치원 제외
- **라. 토지등소유자**(이하 <u>소유자</u>)
- <u>주거환경개선/재개발</u>은 구역내 토지 또는
-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
- <u>재건축</u>은 구역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
- · 단, 지상권자는 제외
- 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www.mbook.kr)

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

정비구역의 지정

제1절 기본계획

1. 수립

- 가) 수립권자
- <mark>특</mark>별시장, <mark>광</mark>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—
- 특별자치도지사, <mark>시</mark>장
- 나) (장관이 아니라) 수립권자는
- <u>10년</u> 단위로 수립
- <u>5년</u>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

다) 도지사가 인정시 대도시 아닌 시는 수립

요 유

2. 내용

가) 기본계획에

- <u>생활권</u> 설정,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주택수급계획,
- <u>생활권</u>별 주거지 정비/보전/관리 방향

- <u>예정구역의 <mark>개</mark>략적 범위</u>와 <mark>단</mark>계별 사업

<u>계획</u> 불요

나) 작성 기준/방법은 장관이 정해 고시

- 3. 의견청취
- 수립/변경시 <mark>14일 이상 주민 공람</mark>
- 지방의회 의견 청취

- 4. 확정/고시 등
- 가) 수립권자
- 기관장 협의 후 지방도시계획위 심의거쳐
- 수립/변경
- 나) 대도시시장 아닌 시장

- 수립/변경한 때 지체없이 공보에 고시, 열람

- 수립/변경시 도지사 승인받음